

2025년 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연세 스타트업 타운] 달팽이집 추가모집 공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입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고,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 및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해당 주택은 청년특화형 주택이며, 청년 1인만 거주가능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 등 청년 1인으로 적용하여 소득·자산조회 진행)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확인)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해당 주택의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의무)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 필수 참여 과정(미제출 및 불참 시, 입주가 제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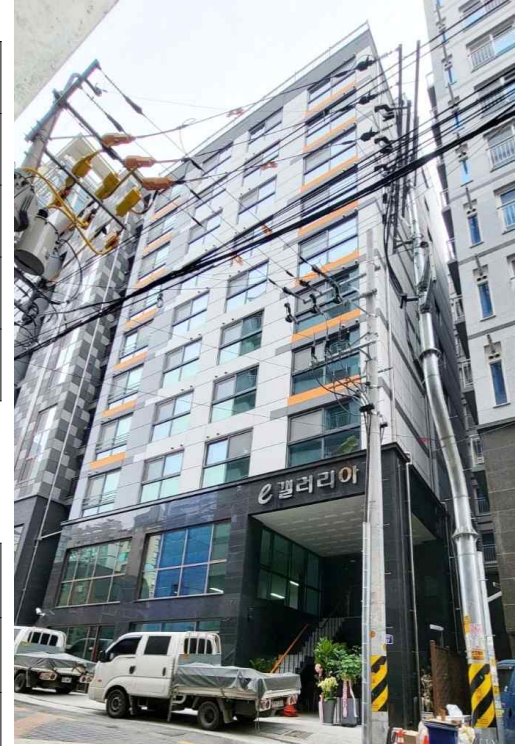
	절차	일정	공지 장소 및 내용	비고
①	모집 공고	07/15(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	▷ http://bit.ly/4IUXFDZ
②	온라인 입주 신청	07/15(화) - 07/29(화)	[연세 스타트업 타운] 달팽이집 입주신청서	▷ https://minsnailcoop.com/208
③	서류 제출 1. 주민등록표등본 2. 주민등록표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7. 입주계획서 8. (해당시) 창업 활동 증명	07/15(화) - 07/29(화) 자정까지	★이메일 제출★ ▷ welcome@mincoop.net	▷ 완비 서류 기준, 마감일(7/29) 메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필요 시 사전 연락주세요) ▷ 서류 제출 방법: http://bit.ly/4IUXFDZ
④	예비입주자 교육	7/28(월) 19:30 (온라인) 8/23(토) 13:00 (오프라인) 9/22(월) 19:30 (온라인)	-신청: 온라인 입주 신청서에서 일자 선택 -(온라인) 줌 -(오프라인) 민달팽이 사무실	▷ 세 일정 중 1회 필수 참여 ▷ 접속 링크 및 장소 개별 안내 ▷ 교육 시간: 2시간
⑤	입주선정자 발표	10/14(화) <i>*발표 일정 변동 시 대상자 분들께 안내 예정</i>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 선정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대기 순번을 안내드립니다.
⑥	주택 공개	대상자 별도 연락	공실예정: 806호/901호	▷ 장소 및 자세한 일정 추후 개별 안내
⑦	계약서 작성	대상자 별도 연락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실	▷ 장소 및 자세한 일정 추후 개별 안내
⑧	입주 기한	~ 11/12(수)	해당 주택	▷ 계약시작일 이전에는 청소 및 짐보관이 일체 금지됩니다. ▷ 11월 12일 이후에는 실 입주일과 상관없이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⑨	평등문화 교육	11/08(토) 13:00 2026/01/10(토) 13:00	-신청: 홈페이지 -교육: 오프라인	▷ 입주 6개월 내 필수 참여 ▷ 장소 추후 안내

2

공급주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7(대현동)

■ 주택정보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7(대현동)
주택 종류	오피스텔
주택 형태	1인 가구(단독형)
규모	지상 3~10층(총 47세대)
주차	주차 불가



■ 설치·부대시설

공용시설	커뮤니티실	306호
	1층	우편함, 무인택배함, CCTV
	옥상	옥상정원

개별시설	기본옵션	천장형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드럼세탁기, 하이라이트, 책상, 옷장, 의자 (침대 없음)
	난방방식	개별난방(도시가스)

■ 주택 관리비

공용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액: 약 6~8만원 (실비에 따라 월별 변동 가능(공동전기료, 점검비 등)) - 항목: 관리원 인건비(공용공간청소), 승강기유지비,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대행,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공용공과금, 인터넷비 등 (항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p>※공용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승강기, 커뮤니티실, 옥상, 계단 등)은 해당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부과됩니다.</p>
개별공과금	개별 세대 공과금은 개인이 사용한 만큼 납부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건물 일괄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어 공용관리비에 의무 부과되며, 취소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택도면



■ 세대별 면적 내역 (3~10층 동일)

단위 : m²

구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전용면적	20.885	19.250	19.250	19.525	21.620	23.920

■ 임대조건 및 모집호수

호수	면적(m ²)			임대조건(원)		모집호수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준보증금	기준임대료	
301호	28.505	20.885	7.62	6,180,000	409,000	
302호	26.29	19.250	7.04	6,180,000	394,000	
303호	26.29	19.250	7.04	6,180,000	394,000	
304호	26.655	19.525	7.13	6,180,000	400,000	
305호	29.5	21.620	7.88	6,180,000	426,000	
401호	28.505	20.885	7.62	6,180,000	409,000	
402호	26.28	19.250	7.03	6,180,000	394,000	
403호	26.28	19.250	7.03	6,180,000	394,000	

404호	26.655	19.525	7.13	6,180,000	400,000	
405호	29.51	21.620	7.89	6,180,000	426,000	
406호	32.65	23.920	8.73	6,180,000	448,000	
501호	28.505	20.885	7.62	6,180,000	422,000	
502호	26.28	19.250	7.03	6,180,000	403,000	
503호	26.28	19.250	7.03	6,180,000	403,000	
504호	26.655	19.525	7.13	6,180,000	409,000	
505호	29.51	21.620	7.89	6,180,000	437,000	
506호	32.65	23.920	8.73	6,180,000	459,000	
601호	28.505	20.885	7.62	6,180,000	422,000	
602호	26.28	19.250	7.03	6,180,000	403,000	
603호	26.28	19.250	7.03	6,180,000	403,000	
604호	26.655	19.525	7.13	6,180,000	409,000	
605호	29.51	21.620	7.89	6,180,000	437,000	
606호	32.65	23.920	8.73	6,180,000	459,000	
701호	28.505	20.885	7.62	6,180,000	426,000	
702호	26.28	19.250	7.03	6,180,000	407,000	
703호	26.28	19.250	7.03	6,180,000	407,000	
704호	26.655	19.525	7.13	6,180,000	414,000	
705호	29.51	21.620	7.89	6,180,000	441,000	
706호	32.65	23.920	8.73	6,180,000	463,000	
801호	28.505	20.885	7.62	6,180,000	426,000	
802호	26.28	19.250	7.03	6,180,000	407,000	
803호	26.28	19.250	7.03	6,180,000	407,000	
804호	26.655	19.525	7.13	6,180,000	414,000	
805호	29.51	21.620	7.89	6,180,000	441,000	
806호	32.65	23.920	8.73	6,180,000	463,000	모집중
901호	28.505	20.885	7.62	6,180,000	426,000	모집중
902호	26.28	19.250	7.03	6,180,000	407,000	
903호	26.28	19.250	7.03	6,180,000	407,000	
904호	26.655	19.525	7.13	6,180,000	414,000	
905호	29.51	21.620	7.89	6,180,000	441,000	
906호	32.65	23.920	8.73	6,180,000	463,000	
1001호	28.505	20.885	7.62	6,180,000	426,000	

1002호	26.28	19.250	7.03	6,180,000	407,000	
1003호	26.28	19.250	7.03	6,180,000	407,000	
1004호	26.655	19.525	7.13	6,180,000	414,000	
1005호	29.51	21.620	7.89	6,180,000	441,000	
1006호	32.65	23.920	8.73	6,180,000	463,000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			커뮤니티실 (306호: 전용면적 23.920 m ²)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 보증금 상/하향 불가

※ 보증금 대출

- 보증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동작신협이 청년사회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 전체 보증 금액의 90%까지 연이율 5%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변동금리)
- 보증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 입주자에게 추후 안내드립니다. 동작신협 청년사회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용 시, 은행 방문 신청 후 최소 일주일 이상의 대출 승인기간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지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해당 대상자는 온라인 입주신청 시 반드시 해당 여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체크시 지원 불가)
- 관련 서류 제출은 추후 연락을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1순위) 비적정주거지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비적정주거지: 쪽방,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2순위) (예비) 창업인 대학(원)생 중 학자금 대출 이용자

2. 지원규모

- 최대 2명 (초과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월 임대료 3배 수준의 보증금 납부
예) 301호의 경우, 기준보증금 6,180,000원 / 기준임대료 409,000원
보증금 지원 시, 보증금 1,227,000원 / 월 임대료 409,000원 으로 입주 가능

3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4,317,797원	6,024,703원	7,626,973원	8,578,088원	9,031,088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기존주택등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기존 100% 금액(3,353,884원)에 가산)

○ (자산기준) 특화형 매입입대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

구분	기준 금액
특화형 매입입대주택(청년) *행복주택(청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모든 운영주택은 청년특화형 주택이며, 청년 1인만 거주가능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 등 청년 1인으로 적용하여 소득·자산조회 진행)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에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 3. **입주자격**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가점) 해당 주택은 청년 창업지원주택으로서, 창업 관련 청년 활동가에게 별도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 창업 관련 가점에 해당 사항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선발기준**

항목	기준		배점(점)			총점
			제출	15	15	
입주계획서	제출 여부		미제출	0		15
			참여	15		
예비조합원 교육	참여 여부		미참여	0	15	
			1)	연세대학교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임직원 중 연대 재적생		10
창업지원 가점	2)	연세대학교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또는 창업지원 기관의 임직원	8			
	3)	연세대학교 동문이 대표인 창업기업의 임직원	6			
	4)	연세대학교 외 창업기업의 임직원	3			

※ 창업 지원 가점 관련 제출 서류는 **6. 제출서류** 참조

※ 창업 지원 가점 확인 및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 동점자의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예비조합원교육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추가로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미리 알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기자(예비순번) 선정**

▷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 수 보다 많을 경우 모집호수의 10배수를 입주대기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실호 발생 시 입주대기 순번대로 공급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1.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의 필수참여 과정을 모두 진행해야 입주 대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안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잘못 기재된 서류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완비 서류 기준, 제출일 7/29(화) 자정까지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이후 도착분은 인정 X)
- 창업 지원 가산점 서류 제출 기한도 7월 29(화) 자정까지로 동일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공급신청자)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공고문 하단 양식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공급신청자)이 정자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입주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2]연세스타트업타운_입주계획서_이름(2025).hwp [별첨3]연세스타트업타운_입주계획서_이름(2025).docx 	별첨 양식

■ 창업 지원 가산점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비고
창업 관련 활동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대학원 재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선발된 증빙서류 (창업동아리 포함) • 창업 관련 활동 증명서 혹은 포트폴리오 (창업동아리 포함) • 창업지원 기관 재직증명서 • 타 창업지원 기관 확인서(입주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창업 관련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창업 지원 가점 확인 및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가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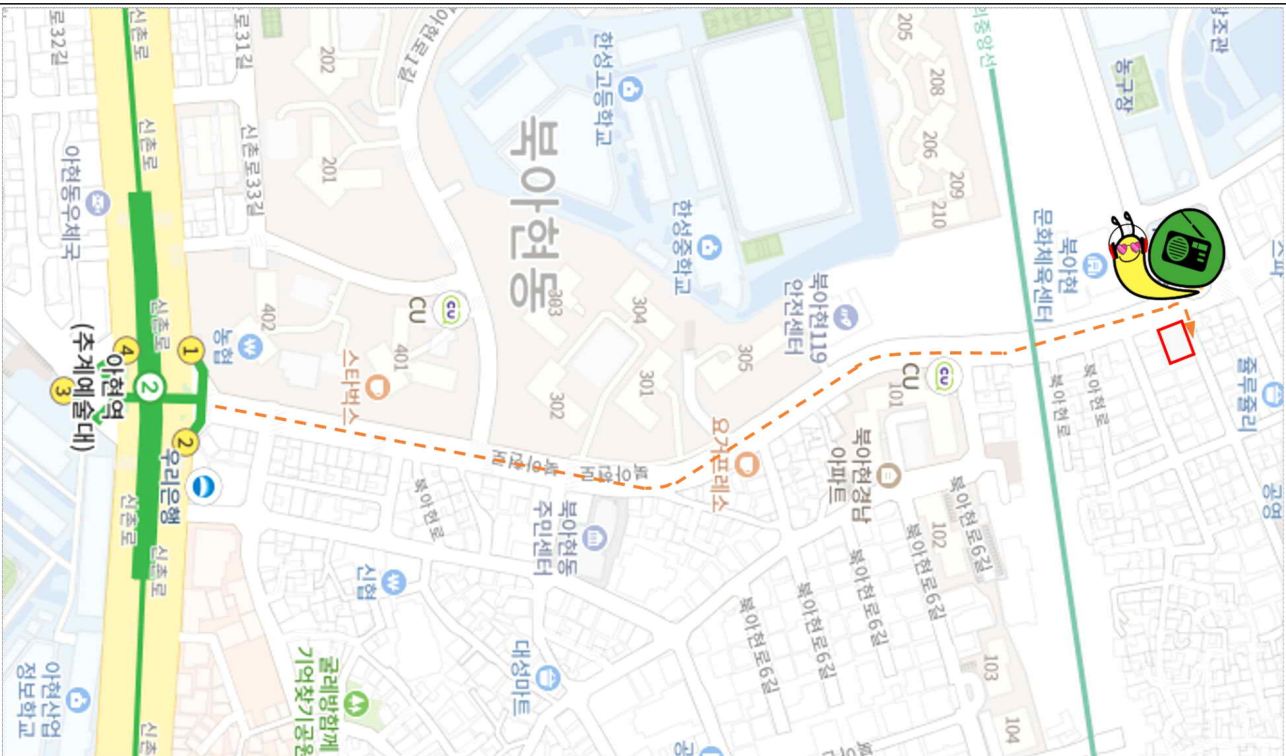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자격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임대인(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 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여부 및 가능 범위는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211호, 2023.5.10,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

관련항목	유의사항
	<p>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8 문의처



주소	(03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구) 북아현동 3-130
문의사항	Tel. 070-4148-9120(사무국) E-mail. welcome@mincoop.net
상담 가능시간	평일 13:00 - 17:00

2025. 07. 15.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직인생략]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직인생략]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기타 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한부모가족, 일반 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_____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